

2009. 12. 4.(금). 09:30

제16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

201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안
검토보고서

의회운영위원회
[전문위원 이해용]

<의안번호 제50호>

2010년 도 세입·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9. 11. 12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09. 11. 16

2. 2010 당초예산안 규모(수정예산 포함, 군 전체)

가. 총괄 - (예산서안 P9)

(단위 : 천원)

회계별	2010년 예산안	2009년 당초예산	증감	증감률
계	383,719,103	348,688,740	35,030,363	10.04%
일반회계	331,020,832	291,903,429	39,117,403	13.40
특별회계	52,698,271	56,785,311	△4,087,040	△7.20

- 2010년도 예산 총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350억 3,036만 3천원이 증액(10.04%)된 3,837억 1,910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음.
- 일반회계 예산안은 3,310억 2,083만 2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91억 1,740만 3천원이 증액(13.40%)되었으며,
- 특별회계 예산안은 526억 9,827만 1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0억 8,704만원이 감액(△7.20%)되었음.

나 세입예산 - (예산서안 P33)

(단위:천원)

구	분	2010년 예산액	2009년 당초예산	증	감	증감률
합	계	361,015,273	322,620,860	38,394,413		11.90%
지	방	세	수	입		
	지	방	세			
	보	통	세			
	목	적	세			
	지	난	년	도	수	입
세	외	수	입			
	경	상	적	세	외	수
	재	산	임	대	수	입
	사	용	료	수	입	
	수	수	료	수	입	
	사	업	수	입		
	징	수	교	부	금	수
	이	자	수	입		
	임	시	적	세	외	수
	재	산	매	각	수	입
	잉	여	금			
	이	월	금			
	전	입	금			
	용	자	금	원	금	수
	부	담	금			
	잡	수	입			
	지	난	년	도	수	입
지	방	교	부	세		
조	정	교	부	금	및	재
보	조	금				
지	방	채	및	예	치	금
						회
						수

다. 일반회계(세출) - (사업명세서 P15)

(단위 : 천원)

부 서 별	2010년예산액	2009년당초예산	증 감	증감률
계	331,020,832	291,903,429	39,117,403	13.40%
의회운영위원회 (의회사무과)	1,034,248	958,942	75,306	7.85
총무위원회	171,643,411	157,922,854	13,720,557	8.58
산업건설위원회	158,343,173	133,021,633	25,321,540	19.04

-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7,530만 6천원(7.85%)이 증액된 10억 3,424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음.

3. 검토의견

■ 의회사무과(사업명세서 P63~74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0년 예산안	2009년 당초예산	증 감	증감율
계	1,034,248	958,942	75,306	7.85%
지방의회 운영지원	806,602	734,470	72,132	9.8%
행정운영경비	227,646	224,472	3,174	1.4%

- 2010년도 당초예산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7,530만 6천원(7.85%)이 증액된 10억 3,424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음.

◇ 지방의회 운영 지원 : 806,602천원(명세서 p67)

○ 2010년도 의회사무과의 세부사업은

- 의정활동 지원 779,122천원으로 9%(64,632천원) 증액
- 의정활동 역량 강화 27,480천원으로 37.5(7,500천원) 증액
- 인력운영비 130,477천원으로 1.4%(1,753천원) 증액
- 기본경비 97,169천원으로 1.5%(1,421천원)가 증액되었음.

○ 2010년도 세출예산이 증액된 주요 내용은

- 일반운영비에 신문구독료, 명함 제작, 제6대 개원행사 등과
- 의정비 월정수당 인상분, 국내여비, 국민건강부담금, 위탁교육비 등임